

1. 개정이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3. 26, 시행 2024. 9. 27.)됨에 따라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단 공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감치명령에 관한 서류에서 이행명령에 관한 서류로 개정함.(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제1호)

- 명단 공개 절차가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별지 8호 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와 법원의 판결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중 “감치명령”을 “이행명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1호 중 “감치명령”을 “이행명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u>감치명령</u> 결정에 관한 서류와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 ----- ----- ----- <u>이행명령</u> ----- ----- ----- ----- ----- --.